

상표 공존 동의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상표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선출원이나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때 출원인은,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의견과는 달리,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표장 자체가 유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인을 접촉하여 공존동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받아 심사관이나 심판관한테 제출하면서 등록을 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존동의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이나 법원에서 공존동의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설사 선출원인이 공존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존동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존동의서는 선출원인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두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등록되어도 좋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생의 정신인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상생의 정신이 우리나라 특허청과 특허법원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다. 문제의 상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바로 당사자 즉 선출원인이다. 그런 선출원인이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이 나서서 공익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오인혼동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수요자가 문제가 있다고 할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못된 시어머니가 사이좋은 누이와 매부 사이를 훼방놓고 있는 것이다.

상표 공존동의서는 많은 나라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상표 공존동의서는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 간에 아주 흔하게 활용된다. 자기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흔쾌히 공존동의서를 허락해준다. 그 허

락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다. 공존동의서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존동의서를 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는 못먹는 감도 찢러보아야 한다. 남을 위해 흔쾌히 공존동의를 허락할 때 자기도 남으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